

의안번호	2215257
의 퇴 인	복기왕의원
회 답 일	2026. 3. 18.
추 계 번호	25B7299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2(안전기준 관련 연구·개발 등)	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4호의7에 따른 <u>페달오조작방지장치</u> 1)의 안전 및 성능 기준,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, 부품안전기준,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(이하 “ <u>성능시험대행자</u> ”라 한다)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·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함(제1항)	재량·의무 규정
2	안 제34조의2(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)	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함(제2항 신설)	의무규정
		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튜닝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(제3항 신설)	재량규정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의7. “페달오조작방지장치”란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,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.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미첨부 근거 규정						
1	안 제29조의2(안전기준 관련 연구·개발 등)		•미대상 －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 및 성능 기준, 페달 오조작 판단·방지 및 안정성 평가기술 등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내용</th><th>예산('26)</th></tr><tr><td>운전자페달 오조작 방지및평가 기술개발</td><td> ○ (목적) 페달 오조작 판단·방지 평가기술, 안전성 평가기술, 안전기준 제도화 방안을 개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○ (기간·예산) '26 ~ '29 / 총 150억원 ○ (연구내용) 페달 오조작 관련 분류체계연구, 사고방지 평가기술 실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등 </td><td>2,600</td></tr></table> 자료: 국토교통부 ※ [참고자료] 운전자페달오조작방지 및 평가기술 개발(R&D) 사업계획	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'26)	운전자페달 오조작 방지및평가 기술개발	○ (목적) 페달 오조작 판단·방지 평가기술, 안전성 평가기술, 안전기준 제도화 방안을 개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○ (기간·예산) '26 ~ '29 / 총 150억원 ○ (연구내용) 페달 오조작 관련 분류체계연구, 사고방지 평가기술 실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등	2,600
	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'26)						
	운전자페달 오조작 방지및평가 기술개발	○ (목적) 페달 오조작 판단·방지 평가기술, 안전성 평가기술, 안전기준 제도화 방안을 개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○ (기간·예산) '26 ~ '29 / 총 150억원 ○ (연구내용) 페달 오조작 관련 분류체계연구, 사고방지 평가기술 실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등	2,600						
2	안 제34조의2(튜닝자동차의안전성 확보)	한국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 튜닝관련조사 연구등수행을 위한 출연 및 지원(제2항)	•미대상 －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현행법 제77조2)를 근거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'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·연구 및 장비개발,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'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(출연)하고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내용</th><th>예산('26)</th></tr><tr><td>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</td><td> ○ 튜닝 교육 및 컨설팅 － 튜닝업계 종사자 교육·컨설팅, 튜닝업체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○ 튜닝부품 성능 및 품질 적합조사 － 튜닝부품 적합조사(부품 구매 및 시험 등) </td><td>810</td></tr></table> (한국교통안전공단출연) 자료: 국토교통부	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'26)	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	○ 튜닝 교육 및 컨설팅 － 튜닝업계 종사자 교육·컨설팅, 튜닝업체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○ 튜닝부품 성능 및 품질 적합조사 － 튜닝부품 적합조사(부품 구매 및 시험 등)	810
		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'26)					
	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	○ 튜닝 교육 및 컨설팅 － 튜닝업계 종사자 교육·컨설팅, 튜닝업체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○ 튜닝부품 성능 및 품질 적합조사 － 튜닝부품 적합조사(부품 구매 및 시험 등)	810						
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튜닝비용 지원(제3항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본문 내용 참조								

2) 제7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2의2. 제34조의2제1항제1호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·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

2의3.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업무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튜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튜닝 비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튜닝 항목의 종류, 국가의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, 해당 튜닝을 하는 자동차소유자의 수 및 튜닝 소요 비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참고로,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(택시·소형화물) 대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첨단안전장치 보급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 내용	예산('26)
교통사고예방지원 (첨단안전장치 보급 사업)	○ 고령 운수종사자(택시·소형화물) 대상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매 및 설치비 지원 - (대상)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(1.4톤 이하) 운수종사자 - (사업규모) 3,260대(2026년 지원 대상) - (지원율) 법인 50%(20만원), 개인 80%(32만원)	1,000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] 운전자페달오조작방지 및 평가기술 개발(R&D) 사업계획

(국토교통부 제출자료)

- (목적) 의도치 않은 가속으로 인한 사고 중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페달 오조작 판단·방지 기술, 안전성 평가기술 및 안전기준 제도 개발을 통한 페달 오조작 관련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
- (사업근거)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
- (사업내용) ① 페달 오조작 정의 및 상황 분류체계 연구(사고분석, 가상·실도로 데이터 수집 및 DB구축)
 ② 페달 오조작 사고방지 평가기술 실증 (평가기술 검증 시제품 및 오조작 AI 기술 개발)
 ③ 페달 오조작 사고방지 기술 제도화 방안 연구
- (총사업비/기간) 해당없음 / '26~'29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총 정부출연금	'26년	'27년	'28년	'29년
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평가기술 개발	15,000	2,600	6,000	3,900	2,500

- (수행주체 및 지원조건) 대학, 출연(연), 기업 등 / 출연(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)
- (사업추진절차) 국토교통부(예산교부) →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협약체결·연구개발비지급) → 연구개발기관
- (추진실적 및 계획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주요내용	예산
1차년('26년)	■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평가 기술 설계(장비·운전자 행태 등)	2,600
2차년('27년)	■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평가 기술 개발 및 정지조건 고도화 기술규정 제안	6,000
3차년('28년)	■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평가 기술 고도화(분석 및 검증) 및 저속 주행조건 기술규정 제안	3,900
4차년('29년)	■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평가 기술 실증 및 고속 주행조건 기술규정 제안	2,500